

구미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 보완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구관리 협의회회의의 구성·운영(안 제9조)
- 나. 공동구의 관리 위탁범위 확대(안 제10조)
- 다. 공동구 안전점검 방법개선(안 제11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(붙임)

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”를 “구미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4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)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)규정에 따라”로, “점용, 사용”을 “점용·사용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“공동구의”를 “공동구”로, “필요가 잇”을 “필요가 있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한다.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되 위원의 자격,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동구를 담당하는 담당국장”을 “부시장”으로, “각호의 자”를 “각 호의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공동구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전기, 토목, 기계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된 전문관리업체 또는 구미시설관리공단에 공동구 관리를”을 “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법 제44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·운영을”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점검) 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수시점검: 내부시설은 매일 1회이상, 외부시설은 주 1회 이상으로 점검한다.
2. 정기점검 :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3. 정밀점검 : 전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4. 긴급점검 :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</u>	<u>구미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4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규정에 의하여 공 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, 부 담방법, 공동구의 <u>점용, 사용</u>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</u> 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)규 정에 따라----- ----- <u>점용·사용</u> ----- ----- -----.
제3조(비용부담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<u>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 의 <u>필요가</u> 있는 때에는 그 보상 비용</u> 5.·6. (생략) ③ ~ ⑤ (생략)	제3조(비용부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공동구</u> ----- ----- <u>필요가</u> 있----- ----- 5.·6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조(공동구에 수용) 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다음 <u>각호</u>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4조(공동구에 수용) ①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전 <u>각호</u> 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 다 <u>고 인정되는 시설</u>	4. -- <u>각 호</u> ----- -----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점용료) ① (생 략)	제6조(점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 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 여야 <u>한다. 따로 정하는 바에 의</u> <u>한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공동구관리협회의의 구성 · 운영) ① (생 략)	제9조(공동구관리협회의의 구성 ·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</u> <u>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</u> <u>로 한다.</u>	② <u>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</u> <u>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</u> <u>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</u> <u>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</u> <u>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되 위원</u> <u>의 자격,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</u> <u>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</u>
③ <u>위원장은 공동구를 담당하는</u> <u>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</u> <u>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</u> <u>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</u> <u>또는 위촉한다. <후단 신설></u>	③ ----- <u>부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 사람</u> ----- ----- -. <u>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</u>

1. ~ 4. (생략) ④·⑤ (생략) 제10조(공동구의 관리위탁) ① 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전기, 토목, 기계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된 전문관리업체 또는 구미시설관리공단에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(생략) 제11조(점검)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,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수시점검은 내부시설은 매일 1회이상, 외부시설은 주 1회 이상으로 점검한다. ③정기점검은 관리기간, 유관기관, 점용기관, 민간전문가 등과 년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. ④특별점검은 장마 등 재해발생	원의 수는 전체 위원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 제10조(공동구의 관리위탁) ①-----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법 제44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②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점검) 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수시점검: 내부시설은 매일 1회이상, 외부시설은 주 1회 이상으로 점검한다. 2.정기점검 :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. 3. 정밀점검 : 전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
---	--

<u>우려가 있는 시기에 필요한 경우 점검하여야 한다.</u>	<u>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 한다.</u> 4. 긴급점검 : <u>공동구관리자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 한다.</u>
---	---

관계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44조의2(공동구의 관리·운영 등)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"공동구관리자"라 한다)가 관리한다. 다만,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14.>

② ~ ③ 생략

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생략

제44조의3(공동구의 관리비용 등) ① ~ ③ 생략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9조(공동구의 관리·운영 등)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2.4.10.>
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
2.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
3. 공동구의 관리·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

② ~ ④ 생략

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정기점검: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2. 정밀점검: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3. 긴급점검: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.

[전문개정 2010.7.9.]

제39조의2(공동구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생략

②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공동구협의회회의 위원장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부시장·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2.4.10.>

④ 공동구협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2.4.10.>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
2.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
3.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

4.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

5.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
⑤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구협회의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2.4.10.>

[본조신설 2010.7.9.]

제39조의3(공동구의 관리비용)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10.7.9.]

소관 실·과		도 로 과
입 안 자	과 장	박 희 철
	담 당	구 춘 서
	담 당 자	한 상 우 (480-5453)